

# 잘못된 국가 통계,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 통계로 인한 정책적 오류와 과대포장 사례를 중심으로 -

2012. 10.

국회의원 김 영 주

(민주통합당, 국회 정무위원회)



## 자료집을 발간하며

통계는 경제를 비롯하여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실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런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이면서 시의성 있는 통계 작성을 통해 통계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대 정부들이 하나같이 국가통계제도 개선 방안을 단골 메뉴로 등장시켜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대책들은 예산과 인력부족 등으로 번번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말았다고 할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통계가 생산되는가 하면 비전문가들의 잘못된 적용 사례가 늘면서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통계의 오류는 부처간 협조 미비와 무관심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7대 국회 정무위에서 저는 가해자 위주의 청소년 범죄정책으로 피해자 통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사기관의 피해자 중심적 사고와 정책 변화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그 때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범죄발생 원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검찰은 범죄 피해자 통계에는 관심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통계가 없다보니 학생은 교과부가, 여성

은 여성부가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보건복지부가 현황을 관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체계적인 관리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진단을 해놓고 올바른 치료를 할 수는 없듯 통계가 부실하거나 왜곡 인용되면 정책의 성공은 요원합니다.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통계기획 및 분석인력이 9명으로 뉴질랜드 245명, 네덜란드 159명, 캐나다 139명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통계 공무원 인력의 대부분은 현장조사원이 차지하고 있고, 내용이 민감한 통계가 나왔을 경우 발표를 앞두고 상급부처의 눈치를 보는 관행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합니다. 심지어 통계청장 자리가 통계전문가 몫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몫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바른 통계를 생산해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인력의 질과 양을 함께 확보해야 하며,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청은 국가통계에 대한 조정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한 이 보고서가 국가 통계의 업그레이드에 발판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2012년 10월 국회의원 김 영 주

## - 목 차 -

### I. 국가통계의 개념

### II. 국가통계 작성 현황

### III. 문 제 점

1. 공식통계와 체감통계의 차이
  - 일반적 상식과 다른 통계작성기준이 적용되는 고용통계
2. 통계작성기관간 통계자료의 차이
  - 비정규직 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세통계를 중심으로
3. 유사·중복 통계 사례
  -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vs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4. 시차문제
5. 작성기관의 전문성 부재와 무관심
  - 범죄피해자 통계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

### IV. 통계로 인한 정책적 오류 사례

1. 국민과 정책당국의 혼란을 야기한 2005년 부동산 관련 통계
2. 빛나간 쌀 생산 추정치, 국민은 쌀값 등급으로 피해 입어
3. 고용 통계 왜곡으로 인한 ‘고용대박’
4. 인구정점 도달시기 오류로 국민연금의 장기 전망의 수정이 불가피

### V. 부정적인 실적을 과대포장하는 경우

1. 유급주휴제도를 포함시켜 최저임금 순위를 조작한 최저임금 통계
2. 정부 임의로 설정한 사교육비 통계작성기준
3. MB 정부, 빈부격차 완화의 근거로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언급하지 않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만 활용

## VI. 개선방안

1. 통계 수요조사의 주체, 대상, 방식, 주기, 각 통계작성기관들의 협조 의무 등을 내용으로 통계 수요조사의 법적 근거를 통계법에 마련
2.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현재의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입법해야
3. 통계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기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4. 효과적인 행정자료 공유를 위한 행정서식 표준화 필요
5. 통계조사 불응률 상승에 대해 통합조사, 전자조사를 확대해야
6. 통계청이 국가통계 관련 예산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통계조정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함
7.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고용보조 통계 지표 개발 절실
8. 통계기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및 예산 확충 필요
9.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청의 역량과 위상 강화 선행

### <참고문헌>

## I. 국가통계의 개념

- 「통계법」상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의미함<sup>1)</sup>
- 이러한 통계 가운데 통계청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통계를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 또는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라고 함<sup>2)</sup>
- 즉, [표 1]의 법률적 분류에 따라 볼 때,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승인통계가 국가통계에 해당되고, 기타통계는 국가통계에 해당되지 않음<sup>3)</sup>

**<표 1> 통계의 종류**

법률적 분류	승인 통계	지정 통계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 가운데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일반 통계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 가운데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

- 1) 「통계법」 제3조제1호.
- 2) 이재형, “국가통계체계의 이해”, 「계간 감사」, 2007년 신년호, 18쪽.
- 3) 엄밀한 의미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모든 통계가 국가통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를 국가통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타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하는 통계로서 「통계법」상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조사방법에 따른 분류	조사통계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
	보고통계	법령에 의한 개인,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국가기관의 행정업무에 수반되어 수집된 자료로 작성된 통계
작성방법에 따른 분류	1차 통계	집단에 속하는 개체의 수 또는 개체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로서 일반적으로 통계조사 결과로 직접 작성된 통계
	2차 통계 (가공통계)	1차 통계를 가공하여 얻어진 자료 등에 일정한 연산을 가하여 작성된 통계로서 1차 통계에 비하여 해석적 특성이 있는 통계

자료: 통계개발원, 「국가통계제도의 발전(2008)」의 내용을 목적에 맞게 재정리.

## Ⅱ. 국가통계 작성 현황

- 2012년 9월 1일 기준으로 국가통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 등 총 381개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고, 그 종수는 872종임
- 작성기관별로 생산되는 통계수를 살펴보면, 40개의 중앙행정기관이 329건의 통계를 작성하고, 26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388건의 통계를 작성하며, 80개의 지정기관이 155건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따라서 기관 당 작성되는 통계수의 비율이 중앙행정기관이 7~8배 높으며, 특히 통계청이 중앙행정기관 통계

329건 가운데 56건을 작성함으로써 약 1/6 정도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표 2> 기관구분별 현황**

(단위: 기관, 종)

(2012. 9. 1. 현재, 기관수, 통계수)

기 관	작 성 기관수	작 성 통계수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 정 부 기 관	301	717	74	643	268	400	49
- 중앙행정기관	40	329	58	271	164	141	24
(통 계 청)	1	56	41	15	43	2	11
(이외기관)	39	273	17	256	121	139	13
- 지방자치단체	261	388	16	372	104	259	25
○ 지 정 기 관	80	155	19	136	99	42	14
- 금융기관	8	25	10	15	12	6	7
- 공사·공단	22	42	2	40	17	23	2
- 연구기관	17	26	2	24	21	3	2
- 협회·단체	24	39	4	35	34	3	2
- 기타기관	9	23	1	22	15	7	1
합 계	381	872	93	779	367	442	63

자료: 통계청, 2012. 9. 1.

**<표 3> 통계분야별 현황**

(단위: 종, %)

통계분야	작성통계수		통계종류별		작성형태별		
	통계수	구성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b>계</b>	<b>862</b>	<b>100</b>	<b>93</b>	<b>769</b>	<b>356</b>	<b>443</b>	<b>63</b>
인구	28	3.2	3	25	4	21	3
고용.임금	36	4.2	7	29	29	6	-
물가.가계소비(소득)	15	1.7	10	5	14	1	-
보건.사회.복지	151	17.5	7	144	104	44	3
환경	26	3.0	1	25	10	15	1
농림.수산	52	6.0	10	42	33	17	2
광공업.에너지	32	3.7	4	28	21	8	3
건설.주택.토지	40	4.6	3	37	16	19	5
교통.정보통신	47	5.5	5	42	23	22	2
도소매.서비스	17	2.0	8	9	15	2	-
경기.기업경영	69	8.0	21	48	49	4	16
국민계정.지역계정	21	2.4	5	16	-	-	21
재정.금융	17	2.0	1	16	2	15	-
무역.외환.국제수지	10	1.2	3	7	1	4	5
교육.문화.과학	46	5.3	3	43	33	12	1
기타(시도기본통계포함)	255	39.6	2	253	2	253	-

자료: 통계청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은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표 4> 주요국 중앙통계기관의 조직**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통계제도	분산형	분산형	분산형	집중형	집중형	분산형
소 속	기재부	상무부	경제·재무성	연방내무성	산업부	총무성

자료: 한국개발원(2004)

- 집중형 통계제도의 경우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고 통계전문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어렵고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음
- 반면 분산형 통계제도의 경우 통계작성의 중복과 불일치로 예산 및 인력이 낭비되는 단점이 있으나,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통계작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통계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표 4> 집중형과 분산형 통계제도의 비교**

	집중형	분산형
특징	-국가기본통계를 단일 전담기관에서 작성하여 각 이용자에게 제공 -부처 간 통계연결기구의 설치 필요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자체 작성 활용 -통계조정기관의 설치 필요
장점	-통계의 균형적 발전과 체계화 용이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통계전문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활용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통계작성에 활용 -통계수요에 신속한 대응

단점	-행정업무분야의 전문지식 활용 곤란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통계작성의 중복과 불일치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 초래 -통계전문요원과 장비의 집중 활용 곤란으로 비경제적
국가	캐나다, 독일,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대만

자료: 이재형(2004)

-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국가규모가 크고 정부기구가 방대한 국가일수록 특정의 통계생산기관이 국가통계의 모든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 각 정부기구가 독자적 통계를 생산할 자원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함
  - 현대적 정부기구의 전통이 오래된 국가일수록 각 정부기관의 고유 업무가 명확히 정착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형성된 정부 각 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업무영역을 쉽게 변경·개편하기 어려우므로 분산형 통계제도의 경향을 가지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조직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통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집중형 통계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할 것임

-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한 국가들 중에서 중앙통계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집중형적인 성격이 강한 편임
- 한국, 영국, 프랑스 등은 각각의 통계기관 내에서 통계기획으로부터 공표에 이르기까지 완료되지만, 미국, 일본 등은 통계생산 공정별로 각 기관간 협조·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별도의 조사기능을 갖지 못한 기관은 상무성 센서스국에 조사부문을 위탁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통해 통계생산 전 과정을 다른 통계생산기관에 위임하기도 함
  -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중앙정부 통계에 있어서 조사기능을 지자체가 담당하며, 자료처리 등은 독립행정기관인 통계센터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통계생산공정 가운데 조사기능과 자료처리 등은 집중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집중형 국가는 대부분 국가의 통계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분산형 국가임에도 통계관련 법제를 채택하고 있음
- 분산형 국가는 대체로 통계관련 법제를 갖추지 있지 않은 대신 개별통계작성과 관련한 법제 혹은 여타 정

보관된 법제에서 국가통계기능에 관련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등은 통계관련 법제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은 분산형 국가의 일반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음

### Ⅲ. 문제점

#### 1. 공식통계와 체감통계의 차이

-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현실과 공식통계의 차이가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분야는 실업률 분야임
- 고용통계의 경우 체감실업률과 공식실업률이 차이가 커 오류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는 통계상의 오류라기보다는 통계작성기준이 일반적 상식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통계작성기준상 실업자의 요건은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 주간을 포함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사람임
  - 위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실업자로 분류됨
  -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업의 개념은 ILO의 기

준에 의거한 것으로서 실업률의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유사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발생함

-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및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등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취업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공식실업률 변동이 제한적임
- 우리 경제의 잠재인력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자 범위에서 누락되어 공식실업률을 낮추는 구직단념자<sup>4)</sup>가 실업자 수의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2011.5월기준 청년층(만 15~29세) 실업자의 수가 31.1만명인데 반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관련 시험준비자가 58.8만명으로서, 이들 취업 관련 시험준비자는 실질적인 실업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체감실업률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고용통계의 경우 사업자 규모별 취업자지표 및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 등에서 표본 왜곡이 지적되기도 함

4)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①적당한 일거리가 없음, ②조사대상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가 없음, ③자격이 부족함을 이유로 조사대상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년 내에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말함

-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사업자 규모별 취업자지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고용 증감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나, 통계청 조사의 구분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통계청은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지표를 1~4인, 5~299인, 30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공표하고 있음
    - 이 때 사업체는 기업체와 다른 개념으로, 기업체는 본사, 지사·점, 영업소 등 1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체로 구성됨
    - 예를 들어 300인 이상 기업체가 5~299인 사업체 2개로 구성되었다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는 300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5~299인 사업체 규모 취업자로 조사됨
  - 통계청의 사업자 규모별 취업자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표본을 사업체가 아닌 기업체로 전환하는 것이 동 통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은 매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표본을 선정하여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통해 산출하고 있음
  - 그러므로 1~4인이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은 제외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1년

- 5월 1~4인 사업체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39.6%로 동 수치에 해당하는 자료가 제외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1인당 월평균임금 산정 시 약 40%에 해당하는 1~4인 사업체 취업자가 제외되고 있음
- 
-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실업 관련 보완적 통계를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존 실업률 산정방식은 국제기준에 의거한 산정방식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보다는 공식실업률을 보완하는 차원의 체감실업률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체감실업률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수준의 지표를 개발하여 개별 상황에 따른 고용실태 판단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미국은 현재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로서 공식실업률을 포함한 6가지의 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음

## 2. 통계작성기관간 통계자료의 차이

- 통계작성기관간 통계자료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비정규직 관련 통계임
- 기본적으로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통

계는 조사대상, 조사기준 및 조사시점이 모두 달라 단순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전국 가구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나,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 또한 고용노동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동일사업체내 인적자원 특성(성, 연령, 학력, 경력, 근속년수)이 같은 정규·비정규직간 임금차이를 분석한 것이나, 통계청의 경우 평균임금 수준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임금격차의 절대치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비해 크게 나타남
  - 그러나 통계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2009년 5월에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비정규직 관련 통계가 상반된 내용으로 발표되어 문제가 되었음
- 2009.5.26일 노동부 보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총액 격차가 12.9%로 2007년에 비해 2.3%p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으나, 2009.5.27일 통계청은 비정규직 임금은 3.1% 감소한 반면, 정규직 임금은 3.0% 증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더 커졌다고 발표하였음

- 반면 2010년 6월에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 조사를 발표하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45.3%로 발표하자, 노동부에서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15.7%라고 발표하는 사례도 있었음
- 동 보도자료에서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간 정규·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수준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2010.5.3일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상태에서 통계청이 자료를 발표하자 즉각 반박자료의 형태로 보도자료를 낸 것은 통계청과 노동부간 통계자료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는 인상을 주었음
- 양 부처간 갈등구조 속에서 통계이용자들은 어떤 통계가 정확한 통계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양 통계자료 모두 신뢰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는 1~4인 사업체 취업자를 전체 취업자의 39.8%(2011년 5월)로 발표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전국사업체 조사를 가공해 분석한 결과 1~4인 사업체 근로자를 전체의 19.3%(2009년)로 발표하였음

- 시기적으로 발표시점의 차이가 있으나, 두 기관의 통계치 차이가 20.5%에 달함
- 이에 대해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의 포괄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32,0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농림어업, 제조업 등 전체 산업부문의 취업자 현황을 파악하는 반면, 전국사업체조사는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사업체, 고정시설이 없는 노점, 행사, 포장마차 등 이동성이 있는 사업체, 가정내의 가사활동, 국방시설, 국제기구 등을 제외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두 조사의 포괄범위가 다름
  -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중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대부분 자영농인 1~4인 규모) 부문의 취업자 수 및 고정시설이 없고 이동성이 있는 사업체를 감안하면 두 조사간 차이는 거의 없다는 입장임
- 전세통계
- 전세통계는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의 전세조사)과 국민은행(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전세조사) 등에서 발표하고 있음
- 통계청은 2010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항목 중

전세가격은 전년대비 2.1%, 12월 한달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월대비 0.4%, 전년 동월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발표하였음

- 국민은행은 2010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전국 전세가격을 전년 대비 9.2% 상승한 것으로 발표하였음

- 통계청의 경우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이 오른 가구 뿐 아니라 계약만료되지 않아 전세금의 변동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며,

- 국민은행은 재계약이 이뤄진 가구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동된 가격을 반영하고 재계약이 일어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한 주변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임

□ 이외에도 통계작성기관간, 통계작성기관과 민간기관간 통계자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통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간 일반음식점 수의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계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2008년의 전국 일반음식점 수를 통계청은 317,077개로 발표하고 있는 반면 식약청은 584,368개로 발표하고 있음

- 두 기관의 통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양 통계(통계청은 ‘사업체총조사’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식약청

은 ‘식품접객업체 수5’를 통해 발표하고 있음)의 조사 방법의 차이와 분류 체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즉, 통계청의 경우 조사원 면접조사를 하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가 자료에 포함되거나 실제 영업신고를 한 업소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식약청은 영업신고 자료를 토대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식약청의 경우 영업신고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다 보면 실제 주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할 지라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다는 문제가 있음
  - 그러나 동일한 대상으로 작성하는 두 통계자료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계자료의 신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음
- 통계청과 경찰청에서 각각 발표하는 자살자 수 통계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
- 2008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통계에서 자살자 수는 12,858명인데 비해 경찰청은 자살자 수를 12,270명으로 발표하였음
  -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살자 수의 집계방식

---

5) 통계청에 의해 승인된 통계는 아님

이 다르기 때문임

- 통계청은 유족이 행정기관에 낸 사망신고서의 사망 원인 항목으로 자살자 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신원 미상자 및 노숙자 등의 사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유족들이 사망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살’로 기록하는 것을 꺼릴 경우 통계청의 통계에는 자살로 집계되지 않음
  - 반면 경찰청은 경찰에 접수된 사망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자살자의 수를 집계하는데, 따라서 통계청 집계에는 포함되는 국외에서 자살하는 사람 및 군부대에서 일어난 자살은 경찰청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음
- 한편, 통계청이 돼지 비육돈(100kg) 소득을 두당 88,000원이라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대한양돈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사례도 있었음<sup>6)</sup>
- 대한양돈협회는 전국 양돈농가 전산성적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농가들의 돼지 비육돈 소득이 두당 58,000원을 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대한양돈협회는 통계청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돼지 지육가를 적용하였으며, 사료비·방역치료비를 과소적용하여 양돈농가가 흑자 경영을 이뤘다는 잘못된 분석

6) 대한양돈협회(2010)

을 하였다고 주장함

### 3. 유사·중복 통계 사례

- 각 분야별로 유사한 통계가 상당 부문 존재하며, 통계의 사용 목적 및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조사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조사통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데, 보고통계와 가공통계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통해 작성하는 반면 조사통계의 경우 전수조사가 아닌 일정한 표본을 가지고 조사하게 되어 다른 두 기관이 동일 대상에게 비슷한 유형의 조사를 실시할 경우 각기 표본이 다르므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기 어려움
- 특히 조사대상이 비슷한 통계의 경우 기관간 협력을 통해 표본을 확충하게 되면 좀더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 조정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 국민은행이 작성하는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작성하는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지역 내 거주하는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할당 추출, 주택구입시기 및 주택구입희망시기를 고려한 부스터 샘플링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함

- 조사내용은 주택경기 및 정책에 대한 일반인식, 주택구입가구의 주택금융 이용특성, 전·월세가구의 주택금융 이용특성, 향후 주택금융 이용희망가구의 특성 등임
- 반면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는 일반가구와 보금자리론 이용가구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함
  - 일반가구의 경우 전국 만 20~59세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 중 지역·연령별로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함
  - 보금자리론 이용가구의 경우 최근 1년간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최근 1년간 보금자리론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함
  - 조사내용은 주택 및 주택금융 수요형태, 보금자리론·e-모기지론 이용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여신업무 및 보금자리론 취급실태 등임
-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와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의 일반가구 부분의 경우 대상이 거의 일치하며, 조사내용 중에서도 조사가구의 일반특성(평균소득, 가구주 연령 및 직업, 거주 형태 등), 주택현재시가, 대출이용행태 등의 부문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

해 작성되는 통계라고 하더라도 분야가 비슷한 경우 일정 부분 내용이 겹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경우 통계조사시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확대하여 조사한다면 좀더 풍부한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으나, 통합된 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할지의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4. 시차문제

- 통계청이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 통계를 분석한 결과, 조사기준시점과 실제조사기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 및 조사기준시점과 확정공표시기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음
- 서비스업총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8종의 통계는 조사기준시점과 실제조사기간이 3개월 이상 시차를 보였음
  - 특히 광업·제조업조사의 경우 기준시점이 매년 12.31 일인데 반해 실제조사기간은 익년 6~7월로 상당한 시차를 두고 조사가 진행됨
  - 조사기준시점과 실제조사기간의 시차는 대부분 연간통계의 기준시점이 매년 말일이기 때문에 통계행정상 한꺼번에 여러 통계의 조사를 진행시키기 어려워 발생한

현상인 것으로 보이나, 조사기준시점과 실제조사기간의 시차가 커질수록 통계조사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

- 통계조사 시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응답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시점과 조사기간의 시차가 클수록 응답자의 응답이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크고,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조사 등과 같은 산업조사는 폐업·창업한 업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계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됨
- 연간통계의 경우 대부분 조사기준시점과 공표시점이 1년 정도 차이가 나 실제 통계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2년 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월간통계의 경우 대부분 공표시점이 익월말로서, 비교적 통계의 적시성이 높았으나, 연간통계의 경우 대부분 공표시점이 익년말로서 적시성 있는 통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가계동향조사, 사이버쇼핑동향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의 경우 작성주기와 공표주기가 일치하지 않음
  - 가계동향조사 및 사이버쇼핑동향조사의 경우 작성주기는 월단위이나,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으며, 어류양식동향조사의 경우 작성주기는 분기이나, 1년 단위로 공표하고 있음
- 몇몇 통계의 경우 잠정치를 먼저 공표한 후 확정공표

- 를 나중에 하고 있으나, 잠정치와 확정치의 오차가 크게 날 경우 통계이용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일례로 2008년 전국 사업체조사는 잠정치 발표시 사업체수는 3,268,297개, 종사자수는 16,269,385명이었으나, 확정공표시 사업체수는 3,264,782개, 종사자수는 16,288,280명으로 차이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잠정치는 보도자료의 형태로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데, 확정치가 발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통계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짐

〈표 5〉 통계청 작성 통계 현황

	작성 주기	조사기준 시점	실제 조사 기간	잠정치 공표	확정 공표
인구 총조사	5년	11.1	11.1~15일	동년 12월말	익년5월(전수) 익년9~12월(표본)
주택 총조사	5년	11.1	11.1~15일	동년 12월말	익년5~7월(전수) 익년9~12월(표본)
인구동향 조사	월	매월동안	매월동안	익월	출생 13개월후 사망 14개월후 혼인 8개월후 이혼 9개월후
경제활동 인구조사	월	당월 15일 포함된 1주	조사시점 끝난직후 1주	-	익월 중순

	작성 주기	조사기준 시점	실제조사 기간	잠정치 공표	확정 공표
가계동향 조사	월	매월 말일	매월	-	조사대상분기 익익월말 (분기공표)
소비자물가 조사	월	조사품목별 상이	조사시점 동일	-	익월 첫날
서비스업 총조사	5년	12.31	익년 4.6~4.29	익년 12월	익익년 3월
광업제조업 조사	1년	12.31	익년 6~7월	익년 10월	익년 12월말
국가자산 통계	1년	12.31	가공통계	익년말	잠정치공표후 8개월 이내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월	당월동안	익월 1~19일	-	익월말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2년	조사대상 년도 5.1일	대상년도 5.15~30일	-	동년 8월
건설업조사	1년	12.31	익년 1~6월	익년 8월	익년 12월
국내인구이동 통계	월	매월동안	보고통계	-	익월말
건설경기동향 조사	월	매월동안	익월 1~18일 (건설수주) 익월 1~22일 (건설기성)	-	익월말
사회조사	1년	5.17 (2010년)	5.17~5.29 (2010년)	-	동년 11월
운수업조사	1년	12.31	익년 4~5월	익년 9월	익년 12월
기계수주동향 조사	월	매월동안	익월 5~19일	-	익월말
경기종합 지수	월	매월동안	가공지표	-	익월말
도소매업 조사	1년	12.31	익년 5~6월	-	익년말

	작성 주기	조사기준 시점	실제 조사 기간	잠정치 공표	확정 공표
서비스업 조사	1년	12.31	익년 5~6월	-	익년말
지역소득	1년	매년동안	가공통계	익년말	익익년 상반기
장래인구 추계	5년	-	가공통계	-	부정기 (대부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익년말)
생명표	1년	매년동안	가공통계	-	익년말
전국사업체 조사	1년	12.31	익년 5~6월	익년10월	익년말
설비투자 지수	월	매월동안	가공통계	-	익월말
농림어업 총조사	5년	12.1	익년2월	익년4월	익년11월
농가경제 조사	1년	매년동안	매년동안	-	익년4월
농축산물 생산비조사	1년	농작물마 다 다름	농작물마 다 다름	-	익년 3월 (농산물생산비) 익년 5월 (축산물생산비)
어가경제 조사	1년	매년동안	매년동안	-	익년 4월
농업조사	1년	12.1	동년 12월	-	익년 3월
어업조사	1년	12.1	동년 12월	-	익년 3월
양곡소비량 조사	1년	전년11~당 년10.31 (양곡년도)	매월조사	-	익년 1월말
서비스업동향 조사	월	매월말일	익월1~20일	-	익월말
생활시간 조사	5년	1차:3월 2차:9월	조사시점 동일	-	익년 3월말
사망원인 통계	1년	1년동안	가공통계	-	익년 9월

	작성 주기	조사기준 시점	실제 조사 기간	잠정치 공표	확정 공표
농어업법인 조사	1년	12.31	익년 6.21~7.23	-	익년 11월
사이버쇼핑 동향조사	월	매월동안	익월 1~22일	-	기준분기 2개월후 (분기발표)
전자상거래 동향조사	분기	분기동안	익분기 첫번째월의 마지막주부터 2주간	-	기준분기 2개월후
장래가구 추계	5년	-	가공통계	-	부정기(대부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익익년말)
국제인구이동 통계	1년	1년동안	보고통계	-	익년 7월
기업활동 조사	1년	12.31	익년 5~7월	익년 11월말	익년 12월
지역별고용 조사	1년	당년 10월중 1주간	조사점 직후 12일간	-	익년 3월
사교육비 조사	1년	1차: 3~5월 2차: 7~9월	1차: 6월 2차: 10월	-	익년 2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1년	12.31	익년 5~6월	-	익년 12월
농작물생산 조사	1년	작물별 수확기	작물별 수확기	-	부정기 (매년 해당작물 수확기 직후)
가축동향 조사	분기	3.6.9.12월 1일	기준일부터 15일	-	조사월말 또는 익월 초
농업면적조사	1년	11.15	11.15~30일	-	익년 1월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5년	9.1	기준일부터 12일	-	조사년도 12월
어업생산동향 조사	월	매월 말일	익월 1~15일	-	익월 말
어류양식동향 조사	분기	분기 말일	매분기 익월 1~20일	-	연간공표 익년 4월

	작성 주기	조사기준 시점	실제 조사 기간	잠정치 공표	확정 공표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분기	매월 5,15,25일	조사기준일	-	매분기 익월
가계금융조사	1년	-	-	-	익년 12월

주: 1) 조사기간이 매년 다른 경우는 가장 최근의 조사를 기준으로 하였음

2) 가계금융조사는 가계자산조사(통계청), 가계신용조사(금융감독원), 한은패널조사(한국은행)를 통합하여 공동작성하는 통계로 가계자산조사에서 가계금융조사로 변경승인(2010.4.8.)된 것임

자료: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목록』, 2010. 및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http://www.kosis.kr)>을 참고하여 재구성

## 5. 작성기관의 전문성 부재와 무관심

□ 범죄피해자 통계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수사기관에서 집계하는 범죄통계는 발생한 모든 사건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신고된 사건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한 사건만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사건은 범죄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 절도범죄나 성폭력범죄와 같이 신고하지 않은 사건이 많은 범죄유형은 공식적인 범죄통계를 통해 범죄피해실태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음. 즉 공식범죄통계는 기본적으로 숨은 범죄(hidden crime)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에서 집계하는 범죄통계는 기본적으로 범죄발생건수와 가해자중심의 통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음
  - 수사기관에서 범죄통계를 입력하기 위해서 △발생원표, △피의자원표, △검거원표를 작성함. 피해자원표는 따로 없고, 발생원표에 피해자의 성, 연령, 피해액수 등에 대한 간단한 사항만 있으므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집계하는 통계를 통해서 피해자의 특성 등을 거의 알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발생원표, 피의자원표, 검거원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즉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범죄원표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임
  
- 청소년과 일반인의 범죄피해통계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
  - 7) 이와 같은 공식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피해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양상을 조사함으로써, 1) 숨은 범죄(hidden crimes)를 정확히 파악하고, 2)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3) 범죄현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수립시 국가재정기획운용 기초자료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4세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번씩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청소년과 성인은 주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이 다르고, 주로 피해를 당하는 범죄피해유형도 달라 청소년과 일반인의 범죄피해조사는 별도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청소년인 경우에는 또래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아동학대, 방임 등 가정폭력, 자매나 형제가 학대나 폭력피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 등의 간접피해 등 성인이 당하는 피해유형과 상이한 피해유형이 있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6년 시행한 청소년 피해조사가 중단된 이유
  - 1999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청소년 피해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청소년피해조사는 정례적인 조사는 아님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범죄피해조사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으로 5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청소년 피해조사의 경우에는 정례적인 조사가 아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이외에 가정에서의 학대나 폭력, 학교이외에서 당하는 범죄피해 등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 2009년에 처음으로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범죄피해 등을 종합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정부부처의 협조를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왜냐하면 종합적인 조사에는 △법무부(범죄피해), △교육부(학교폭력), △보건복지부(가정폭력) 등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피해유형을 모두 조사해야 되는데 각 부처 모두의 협조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 CCJS관련 통계지표 케이스가 실제 통계와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
  
- 1993년 기준조사에서 2005년 기준조사(2006년 조사수행)에 이르기까지의 범죄피해조사의 표본규모는 2,000명에 불과하였으나, 전면 개편을 통해 국가통계승인번호를 획득한 2009년의 개편조사에서는 4,710가구, 10,671명으로 대폭 증가시켰으며, 2010년 기준조사(2011년도에 조사수행)에서는 7,550가구, 16,773명으로 확대되었음.
  
- 하지만 주거침입강도, 강도나 강간 등 전형적 범죄피해의 발생량 및 피해실태를 추정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한 수준이며, 특히 각 시도별 지역적 수준과 특성을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유용한 범죄예방정책수립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중요하고 심각한 범죄유형 중 가장 발생빈도가 낮은 범죄의 발생을 고려하여, 표본규모를 현재보다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최소 약 만 6천가구로 확대해야 할 필요)

- ※ 현재 개편된 표본규모는 전체인구의 0.022%(4천8백만추산)에 해당되는 반면, 미국 NCVS는 10만명으로 전체인구(약 3억)의 0.033%에 해당되고, 영국 BCS의 조사대상은 4만6천명으로 전체인구(약 6천만명)의 0.076%정도에 대한 경험률을 조사하고 있음
  
- 2010년 범죄피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청 표본과에서 시도별 공표를 위한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산출한 결과 상대표준오차를 10%로 잡을 경우 약 4만 2천가구, 17%로 잡았을 경우 만 5천가구로 표본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8)</sup>

#### IV. 통계로 인한 정책적 오류

- 2005년 부동산 관련 통계
  - 2005년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통계가 부처마다 달라서 국민과 정책당국의 혼란을 야기하였음

---

8) 이에 따라 2013년 조사에서는 표본규모를 만 6천가구로 확대하고자 예산을 9억 신청하였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받지 못하고 지난 2011년 조사에 마찬가지로 5억으로 승인된 상황에 있음

- 주택보급률의 경우 (구)행정자치부는 73.0%, (구)건설교통부와 통계청은 102.2%로 발표하였음
-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구)행정자치부는 72만 2,054세대, 국세청은 158만 가구로 발표하였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구)행정자치부는 16만 5,126세대, 국세청은 18만 874가구로 차이를 보였음
- 부처별 통계의 차이로 인해 중요한 정책결정의 기준 통계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음
- 주택보급률의 차이는 (구)행자부가 주민등록상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 반면 (구)건교부는 단독가구를 제외했기 때문임
- (구)건교부의 주택보급률은 주택수에서 보통가구수를 나눈 것임
  - 주택보급률 = 주택수 ÷ 보통가구수
  - 주택수는 한 가구가 살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①영구건물, ②한 개이상의 방과 부엌 ③독립된 출입구, ④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인구주택총조사기준)
- ※ 다가구주택의 경우 소유권 단위 기준을 적용하여 1호로만 인정됨
  - 보통가구수 = 일반가구수 - 1인가구 - 5인이하 비혈연가구

- (구)행자부의 주택보급률은 ‘가구’ 대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을 산정함
    - 주택보급률 = 주택수 ÷ 가구수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통계의 부처별 차이는 (구)행자부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주택을 기준으로 삼고, 국세청은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임
  - (구)행자부 통계에 빠져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무허가 주택 등이 국세청 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부터 ‘신주택보급률’을 도입하였음
  - 주택수에 다가구구분거처를 반영하고, 보통가구로 산정하고 있는 가구수를 1인가구를 포함하는 일반가구수로 대체하였음
- 
- 2010년 농림수산물식품부와 통계청이 작성한 2008년과 2009년 쌀 예상 생산량 통계를 실수확통계에 앞서 발표하였으나, 예상 생산량과 실제생산량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
  - 특히 2009년의 경우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1.5%가 증가한 생산량을 보였음
  - 이로 인해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실제 생산량 통계가 나올 때까지 잘못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쌀가격 대책을 수립하였음

- 쌀 생산 추정치는 수요량보다 많은 429만 5,000톤이었으나, 실제 추수가 끝난 뒤 집계해본 결과 생산량이 수요량 보다 적은 양이어서 실질적으로 추수 후 쌀값이 치솟았고 국민은 쌀값 등급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음

□ 고용 통계 왜곡으로 인한 ‘고용대박’

- 정부는 2011년 10월 취업자가 50만 명 증가한 것을 두고 ‘고용대박’이라고 자화자찬했으나 이는 통계자료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현실성에 의구심이 제기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던 고용률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용시장이 일시적으로 매우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 착시효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 30대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50, 60대의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반영할 수 있음

□ 인구정점 수정

- 2011년 통계청은 2010년 기준으로 작성한 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216만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다고 인구정점 도달시기를 수정 발표하였음
- 이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추계보다 인구가 최대치에

- 도달하는 시기가 12년 늦춰진 것으로 당시에는 2018년에 4,934만명을 기록하면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통계청의 수정발표로 기대수명과 인구구조변화에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의 장기 전망의 수정이 불가피함
    - 2005년 기준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50년 남녀수명이 각 82.9세, 88.9세로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최고 2,465조원을 기록하고 나서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2050년 기대수명이 남성은 85.1세, 여성은 89.3세로 늘어나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인구통계는 연금, 노인 문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기초로 작용하며, 대학 입학생 같은 교육수요를 예측하는 근간이 되며, 산업활동 및 성장잠재력 예측 등에도 중요한 자료로 인용된다는 점에서 인구정점의 수정으로 인한 정책변화가 불가피함

## V. 부정적인 실적을 과대포장하는 경우

- 2011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조작해 OECD순위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 홍희덕 의원은 정부가 시간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제도를 포함시켜 최저임금 순위를 조작한 점을 지적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유급주휴제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의 월 환산시 주 44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2009년 월 70만 4,000원에서 90만 4,000원으로 2010년 월 72만 3,360원에서 92만 8,86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 유급주휴제도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임
    - 이로인해 한국의 OECD 최저임금 수준은 21위에서 11위로 상승하였음
  -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총액은 20조 1,266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7,452억원 (3.6%)로 줄었음
    - 이에 대하여 통계청 측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원인이라고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대학입시 컨설팅, 재수생 학원 수강, 영유아 교육비용 등을 통계에서 본질적으로 제외시킨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였음
      - 즉, 사교육비의 경우 통계의 성격상 제대로 된 통계작성이 어려우므로 정부의 통계 작성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 제기되었음

- 또한 사교육비가 사회적 이슈가 되니 통계작성기준을 정부가 임의로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지니계수

- 2010년 정부는 이명박 정부 2년을 평가하면서 빈부격차 완화의 근거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활용하였음  
정부가 인용한 통계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로 2007년 0.300에서 2008년 0.298로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활용하면 2007년 0.324에서 2008년 0.325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는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언급하지 않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추이를 통해 정책성과를 강조하고자 하였음

## Ⅵ. 개선방안

1. 통계 수요조사의 주체, 대상, 방식, 주기, 각 통계작성기관들의 협조 의무 등을 내용으로 통계 수요조사의 법적 근거를 통계법에 마련

- 통계수요조사의 대상을 통계작성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업 또는 민간연구기관과 같은 통계이용자가 제외되어 수요조사의 대표성이 결여됨

-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통계 수요를 균형 있게 파악하기 보다는 통계청의 통계 위주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함
- 개별 통계작성기관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수요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고, 통계청이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통계수요로 집약하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요조사 방식이 이루어질 필요

2.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sup>9)</sup>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현재의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입법해야

- 통계청이 개선의견을 제시하더라도 해당 부처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통계청이 실시한 모든 평가 결과를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사이트(<http://kostat.go.kr/psd>)에 공개하고, 해당 부처는 통계청의 평가의견에 따른 이행현황 및 그에 따라 구축된 통계를 동 사이트에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지역통계 강화를 위한 재원투입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지방청이 위탁대행해온 통계를 해당 지자체가 자체 개

9)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란 각 부처가 제·개정하는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통계지표가 구비되어 있는지, 미비한 경우에 개발·개선 계획이 있는지 등을 통계청이 함께 검토하는 제도

발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임

3. 통계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기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통계생산에 있어 해당 행정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협조 미흡으로 인해 별도의 조사를 통해 통계를 생산하는 것은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예산·시간·노력의 낭비를 유발함
- 행정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않는 데는 해당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일차적인 문제이지만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임
- 법적인 근거나 당위성만을 내세우며 자료공유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 및 신뢰조성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4. 효과적인 행정자료 공유를 위한 행정서식 표준화 필요

- 행정자료의 공유를 위해서는 처음 행정서식을 작성할 때부터 행정목적뿐만 아니라 통계적 활용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야 함
- 행정서식의 표준화에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기획, 조사, 생산하던 행정자료와 통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성 있

## 계 작성하여야 할 것임

### 5. 통계조사 불응률 상승에 대해 통합조사, 전자조사를 확대해야

-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소득, 자산 등 사적인 내용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경제 및 기업 관련 통계종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계조사에 응답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음
- 통계응답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청을 비롯한 통계조사기관들은 응답부담을 완화하거나 통계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해당 통계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의 통계인지를 먼저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된 통계조사의 경우에 통합조사와 전자조사방식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 6. 통계청이 국가통계 관련 예산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통계조정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함

- 통계작성이 ‘분산형’ 구조인 경우에는 유사·중복통계의 방지를 위해 통계조정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통계청이 통계작성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마다 유사·중복통계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유사·중복통계 논란이 상당부분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통계 간에는 유사·중복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설문조사 결과, 통계업무담당자들은 통계청의 ‘통계작성의 승인 및 취소’ 권한이 가장 효과적인 조정수단이라는 의견과 함께 국가승인통계의 유사·중복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통계청의 통계조정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임

## 7.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고용보조 통계 지표 개발 절실

- 정부는 실업률이 체감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매월 고용동향 발표시 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와 구직단념자<sup>10)</sup> 현황 정보를 같이 공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그러나 단편적인 양적 정보 제공만으로는 체감실업률과의 괴리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통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도 체감실업률을 측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고용보조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실업률은 우리 경제 및 노동시장의 성과를 대표적으로 설명해주는 지표이지만, 이 하나의 지표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경제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촉발된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를 담아내기는 어려움

10) 통계청은 구직단념자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주변에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정의

- 특히 체감실업률이 공식실업률과 괴리되는 현상의 이면에는 불안전취업자와 잠재적 실업자의 존재로 인한 고용의 질 악화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이들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체감실업률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체감실업률 지표 개발의 핵심 과제는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사람들 중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불안전취업자와 잠재적 실업자의 두 범주로 접근할 수 있음
- 불안전 취업자의 경우 ①주당 근로시간 기준을 몇 시간으로 결정할 것인지 ②어떤 단시간근로의 사유를 포함할 것인지 ③추가취업 희망 여부를 파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잠재적 실업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의미가 큰 사람들을 선별해 내어야 함
  -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경계선상에 있는 잠재적 실업자는 현재 일이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①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②구직활동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①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②구직활동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적 자원으로서 의미가 큰 사람들로, 이들을 잠재적 실업자로 포섭하는 것은 무리가 없음
  - 한편,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①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②구직활동기간 중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잠재적 실업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체감실업률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일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여 이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할 것임

□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은 체감실업률을 포함한 자국의 노동시장에 적합한 대안적 고용지표를 개발하여 매월 고용지표 발표 시 같이 공표하고 있음

○ BLS가 발표하는 실업률 지표는 공식실업률을 포함한 6가지로 각 지표가 포섭하고자 하는 실업자(혹은 노동력 저활용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지표 중 U-6가 체감실업률에 해당함

- U-1 : 15주 이상 실업상태에 놓인 장기 실업자
- U-2 : 실직자(job losers) 및 임시 고용이 종료된 자
- U-3 : ILO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식 실업자(official unemployee)
- U-4 : 공식 실업자 및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
  -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자신에게 적합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후술하는 한계근로자 중 일부에 해당함

- U-5 : 공식 실업자 및 한계근로자(marginally attached worker)
  - 한계근로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임
- U-6 : 공식 실업자, 한계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자 (part-time for economic reasons)
  - 불완전취업자는 풀타임 근로를 원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그런 직장을 구하지 못한 파트타임 취업자임. 이들은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미만임

### <그림 1> 미국의 체감실업률 공표 사례

The screenshot shows the top navigation bar of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website. It includes the logo, the tex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and 'BUREAU OF LABOR STATISTICS', and various utility links like 'A to Z Index', 'FAQs', 'About BLS', 'Contact Us', and 'Subscribe to E-mail Updates'.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social media sharing icons and a search bar.

#### Economic News Release

Table A-15. 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

HOUSEHOLD DATA  
Table A-15. 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  
[Percent]

Measure	Not seasonally adjusted			Seasonally adjusted					
	Mar. 2011	Feb. 2012	Mar. 2012	Mar. 2011	Nov. 2011	Dec. 2011	Jan. 2012	Feb. 2012	Mar. 2012
U-1 Persons unemployed 15 weeks or longer, as a percent of the civilian labor force	5.7	4.9	4.9	5.3	5.0	5.0	4.9	4.8	4.6
U-2 Job losers and persons who completed temporary jobs, as a percent of the civilian labor force	5.8	5.1	4.8	5.4	4.9	4.9	4.7	4.7	4.5
U-3 Total unemployed, as a percent of the civilian labor force (official unemployment rate)	9.2	8.7	8.4	8.9	8.7	8.5	8.3	8.3	8.2
U-4 Total unemployed plus discouraged workers, as a percent of the civilian labor force plus discouraged workers	9.7	9.3	8.9	9.4	9.3	9.1	8.9	8.9	8.7
U-5 Total unemployed, plus discouraged workers, plus all other persons marginally attached to the labor force, as a percent of the civilian labor force plus all persons marginally attached to the labor force	10.6	10.2	9.7	10.3	10.2	10.0	9.9	9.8	9.6
U-6 Total unemployed, plus all persons marginally attached to the labor force, plus total employed part time for economic reasons, as a percent of the civilian labor force plus all persons marginally attached to the labor force	16.2	15.6	14.8	15.7	15.6	15.2	15.1	14.9	14.5

NOTE: Persons marginally attached to the labor force are those who currently are neither working nor looking for work but indicate that they want and are available for a job and have looked for work sometime in the past 12 months. Discouraged workers, a subset of the marginally attached, have given a job-market related reason for not currently looking for work. Persons employed part time for economic reasons are those who want and are available for full-time work but have had to settle for a part-time schedule. Updated population controls are introduced annually with the release of January data.

자료 : BLS, *The Employment Situation-March 2012*

## 8. 통계기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및 예산 확충 필요

- 분산형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계기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예산구비가 필수적이나, 현재와 같이 부족한 인력 및 조직을 가진 개별 기관이 통계를 작성할 경우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되기 쉬움
- 분산형의 장점은 통계작성기관이 해당분야에 필요한 통계가 어떤 것인지, 이용자들의 수요가 어떠한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장점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및 예산 구비가 필수적임
- 정부기관의 경우 통계전담조직을 가지고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은 통계청을 제외하면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의 4개 기관 뿐임
  - 이외의 나머지 기관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민간지정기관의 경우에도 대부분 통계전담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관별 승인통계가 1~2종에 그치고 있으나, 몇몇 기관의 경우에만 통계전담조직을 두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정보통계실을,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통계연구센터를,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사통계팀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통계정보센터를 두는 등 통계전담조직을 두는 사례가 있음
- 통계업무를 주로 전담하고 있는 통계청의 경우에도 각

국별, 과별로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특정 통계분야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통계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않은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 더 심각하게 발생함
- 현실적으로 통계업무를 ‘한직’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도 통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됨
- 순환보직체계상 통계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업무에 대한 학습 및 숙련을 통해 전문성을 쌓기보다는 빨리 다른 업무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 9.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청의 역량과 위상 강화 선행

- 우리나라의 경우 분산형 통계제도로 인해 기관별 유사
  - 중복 통계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통계청의 통계조정능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는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통계조정기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통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또한 통계작성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관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을 앞세워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성이 떨어지는 통계를 생산할 가능성이 커짐

-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통계청이 주요 통계의 많은 부분을 작성하면서 통계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집중형 통계제도를 가미한 형태의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통계청이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이 작성하는 통계와 다른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가 충돌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며, 각 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유사·중복통계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집중형 통계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집중형 및 분산형 통계제도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집중형 통계제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도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현실적으로 완전 집중형 통계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우며, 집중형 통계제도의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의 기관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해 왔으므로 기관 나름대로 통계작성의 전문성이 축적되어 온 면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임
  - 특히 고용노동부의 경우 자체적 노력을 통해 노동통계

작성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민간지정기관 중 독자적 통계작성기관을 통해 전문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집중형 통계제도로 전환할 경우 이들 기관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 따라서 개별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품질평가를 통해 현저히 전문성이 부족하여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 통계청에서 통합적으로 작성·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집중형 통계제도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청의 역량과 위상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장관급 조직으로 새로 출범한 국가통계위원회는 유사·중복통계에 대한 지속적 정비를 통해 분산형 통계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엄격한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통계를 통계청으로 이관·작성하도록 하여 집중형 통계제도를 강화해야 함
  - 통계청이 그 동안 유사·중복 통계 및 저품질 통계의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은 통계청이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관간 갈등을 제대로 조율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측면이 큼
    - 따라서 국가통계위원회가 「통계법」 개정으로 장관

급 조직으로 격상된 만큼 기관간 갈등 조정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통계청은 중앙통계작성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작성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조직원의 지속적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역량을 강화시키고, 신규 직원 채용 및 인사 관리 측면에서도 전문성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문헌>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2007.6.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계청 기관운영감사-」, 2009.4.
- 노동부,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15.7%로 나타나」, 노동부 보도자료, 2010.6.4.
- 박기현,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현안보고서』 제15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년 5월 14일.
- 서만영, 「국가통계관리의 개선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손민중,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원인과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제7호, 삼성경제연구소, 2004.
- 안정용·이은정, 「우리나라 국가통계 및 인력에 관한 고찰」, 『통계연구』 제10권 제2호, 통계청, 2005.10.
- 이재형,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4.12.31.
- 통계청a, 『식품 분야 200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09.
- 통계청b, 『아동·청소년 분야 2009년 정기통계품질진

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09.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각 연도.
- 통계청 해명자료, 「하루만에 급추락한 비정규직 처우」, 2009.5.29.
- 감사원. (200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_\_\_\_\_. (200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계청 기관운영감사」.  
\_\_\_\_\_. (20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계청 기관운영감사」.
- 국회예산정책처. (2010). 「국가통계사업 평가」.  
\_\_\_\_\_. (2010). 「2009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Ⅱ」.







